##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91

발의연월일: 2024. 12. .13

발 의 자:김한규·박지원·장철민

이원택 · 김태년 · 백혜련

이건태 • 박희승 • 문정복

민병덕 • 진선미 • 박정현

김영환 · 위성곤 · 양부남

이용우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 약 한다'라고 군인의 명령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밤 벌어진 위헌·위법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명령의 경우,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의무와 명령 복종의 의무가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함.

실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명령을 받아 투입된 일부 군인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명령을 복종해야 하는 군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 큰 혼란을 겪었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 조항에 예외를 신설하여, 군인이 위헌

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라는 군인의 기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 조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헌 · 위법적 명령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	
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다만, 위헌ㆍ위법적 명령의 경
	<u>우는 예외로 한다.</u>